

자율점검 운영 및 협조 요청 안내

- 「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·청구 불일치」 항목 -

□ 자율점검제 개요

- (개념) 요양기관에서 이미 지급 받은 요양(의료)급여비용 중 착오청구 등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
- (관련근거)
 -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70조 제1항 [별표5] 4. 감면처분
 - 「요양 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315호, 일부개정)
 - 「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98호)

-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(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), 「의료법」 제22조 (진료기록부 등) 제1항 등에 의거 **요양급여비용의 청구**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 대하여 **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정확히 청구**하여야 함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(약제·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)
법 제46조에 따라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·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.
 1. 한약제: 상한금액
 2. 한약제 외의 약제: 구입금액
-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(요양급여대상의 고시)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,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, 약제 및 치료재료로 구분하여 고시한다.
[별표1]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(제5조제1항 관련)
 1. 요양급여의 일반원칙
 - 바.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**약제·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**하여야 한다.

□ 운영 내용

○ (운영기간) '24.2월 ~

※ 내·외부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

○ (대상기간) 요양기관별 구입·청구 차액 상위 6개월 우선 점검 후 착오청구 내역 확인 시 36개월('20.7월~'23.6월)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상기간 확대

○ (제출기한)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,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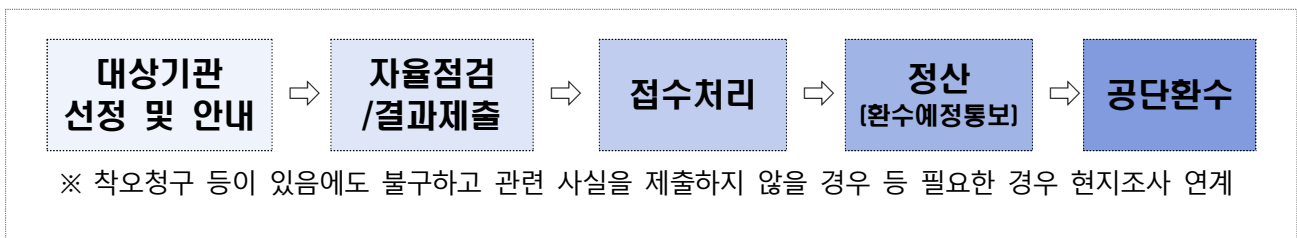
○ (점검사항)

- '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'를 산정기준 및 급여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 및 기록 후 요양·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여부
- 제출 자료의 위·변조 여부, 실제 행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여부
-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내·외부 전문가에게 자문

○ (방법 및 절차) 우리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 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하여 **[별첨2]** 자율점검 결과서 및 점검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

-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함
- 단,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 또는 위·변조 자료 등 허위사실 제출 시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음

【 자율점검 운영절차 】



□ 협조 요청사항

- 자율점검제 운영 목적, 신고 방법 및 절차, 점검 필요성 등 요양기관에 적극 협조 관련 홍보 [별첨1]
 - 통보받지 않은 요양기관에도 자발적으로 참여(자진신고)할 수 있도록 방법·절차 안내
 - 자진신고시 [별첨3] 자진신고서를 작성하고 점검결과에 대하여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로 제출하도록 안내

- 요양기관업무포털 (<http://biz.hira.or.kr>) 이용 안내사항
 - 공인인증서* 로그인 > 우측 상단 '모니터링' 선택 > 좌측에 '부당이득 자율점검' 메뉴 생성(해당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에만 확인가능)
 - 자율점검결과서 서식 다운 또는 업무포털을 통해 자료제출 가능
 - 업무포털을 통해 자료 제출 시 '제출완료' 클릭 후에는 수정 불가하므로 제출완료 전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 필요

요양(의료)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 안내

- 「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·청구 불일치」 자율점검 관련 -

자율점검제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미 지급받은 요양(의료)급여비용 중 부당청구 개연성을 인지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이를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공포 2022.12.27. 시행 2023.1.1.)」 및 「요양·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315호, 시행 2022.12.30.)」에 따라,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(업무정지 또는 과징금)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.

금번 「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·청구 불일치」에 관한 자율점검은 ① 부신피질 호르몬 주사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(수량, 금액 등) 일치 여부 ② 요양(의료) 급여비용 청구 내역과 실제 시행한 행위의 동일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.

이와 관련, 귀 원의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()년 ()월부터 ()년 ()월 진료분(기관별 상이)에 대하여 상기 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,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자율점검대상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, 궁금하신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자진신고 관련 안내

자율점검 대상 항목의 대상기간(36개월)이외 기간이나, 대상 항목이외 항목에 대하여 자진신고가 가능하며, 자진신고 내용 및 신고 기간에 한하여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(업무정지 또는 과징금)은 면제됩니다.

다만, 거짓청구 유형 및 외부요인(언론보도, 수사, 다른 기관 부당청구 사실 인지 등)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1) 자율점검 방법

- [점검사항]

- ①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(수량, 금액 등) 일치 여부 점검
- ②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사용한 수량의 동일 여부 점검 등

- [점검대상기간]

- ① 6개월: 기관별 반기별 청구금액 상위기간
- ② 36개월: 6개월 기간에 대하여 착오청구 확인 시 '20.7. ~ '23.6. (36개월) 범위 내 추가 점검

- [제출기한] 자율점검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

- [제출서류]

- ① 착오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
 - 자율점검결과서
 -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진료기록부, 진료비계산서(영수증, 세부내역서)
 - 자율점검 세부내역 또는 자체서식
 -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의 거래원장 또는 거래명세서
 - ※ 거래원장 스캔본과 거래명세서 엑셀파일을 요양기관 업무포털 또는 이메일로 제출
- ② 착오청구 환수 동의 관련 서류 제출 또는 자율점검결과서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제출
- ③ 그 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[제출방법] 등기우편, 직접 방문, 요양기관 업무포털 등을 활용하여 접수

*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접수 시 담당직원과 사전협의 필요

(단, 담당직원 요청 시 등기 우편을 통한 원본 제출)

** (주소)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동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

- [문의처]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

이은진 팀장 (☎ 033-739-5906), 안은정 과장 (☎ 033-739-5913)

오미지 과장 (☎ 033-739-5933), 김영림 과장 (☎ 033-739-5912)

정혜수 대리 (☎ 033-739-5925)

2) 자율점검 운영 절차



※ 착오청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조사 연계

자 율 점 검 결 과 서

(앞 면)

- ①○ 요양(의료급여)기관 명칭(기호):
- ②○ 소재지: (TEL :)
- ③○ 대표자 성명:
- 면허번호:

○ 점검 결과

상기 본인은 자율점검 항목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상세내역을 바탕으로 (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·청구 불일치)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제출합니다.

④ <뒷면 참고>

- 1. 대상기간: 년 월 ~ 년 월 (개월)
- 2. 점검결과: 정당 착오청구
- 3. 자율점검 사항 (착오청구 유형 중심 기재)
- 4. 착오유형: (중복체크 가능)

순번	착오청구 유형	확인
1	실제 사용량 보다 증량 청구	<input type="checkbox"/>
2	동일 성분 약제로 대체 청구	<input type="checkbox"/>
3	기타 착오 유형:	<input type="checkbox"/>

5. 위 사실을 바탕으로 착오청구 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[동의] 합니다.

⑤ 년 월 일

⑥ 대표자(개설자) (인)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

- ⑦ 제출 서류
 - 1. 부당 청구 여부 및 소명에 관한 서류
 - 2.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

작성방법													
①	자율점검자(대표자)가 속한 요양(의료급여)기관의 명칭 및 기호를 적습니다.												
②	자율점검자(대표자)가 속한 요양(의료급여)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												
③	자율점검자(대표자)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적습니다.												
④	<p>※ 점검내용은 실제 조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되 <u>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</u></p> <p>(예시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1. 대상기간 : 2020년 7월 ~ 2023년 6월 (36개월) ※ 통보대상 기간 6개월 포함하여 36개월 범위 내 점검 기간 전체 기재</p> <p>2. 점검결과: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당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착오청구</p> <p>3. 자율점검 사항 (착오청구 유형 중심 기재) ※ 개별 수진자가 아닌 전반적인 진료 경향 및 구입청구 불일치 사유 등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4. 착오유형: (중복체크 가능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순번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착오청구 유형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확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실제 사용량 보다 증량 청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td>동일 성분 약제로 대체 청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 <td>기타 착오 유형: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5. 위 사실을 바탕으로 착오청구 된 요양급여 비용 환수에 [동의] 합니다. ※ 괄호 안에 자율점검 사항에 따른 착오청구 금액 환수 동의여부를 작성해주세요.</p>	순번	착오청구 유형	확인	1	실제 사용량 보다 증량 청구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2	동일 성분 약제로 대체 청구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3	기타 착오 유형:	<input type="checkbox"/>
순번	착오청구 유형	확인											
1	실제 사용량 보다 증량 청구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									
2	동일 성분 약제로 대체 청구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									
3	기타 착오 유형: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
⑤	자율점검 결과를 작성한 일자 기재												
⑥	대표자의 성명 기재 및 직인 날인 ※ 공동 대표자일 경우 대표자 전체 성명 기재 및 날인 필요												
⑦	1. 진료기록부 등 점검 결과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 ※ 자율점검제 통보 안내문의 제출서류 참조 2. ④-5에 동의여부 기재 시 별도서류 제출 불필요												

별첨3

자진신고서 서식

자진신고서

접수번호:		접수일자:				
※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						
신고인	요양기관기호(명칭)					
	요양기관 소재지					
	대표자 성명		전화번호			
	E-MAIL					
	휴대폰 번호	정보알림 받기에 동의하십니까?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			
아래 부당청구 자진신고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√ 표를 합니다.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동 신고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외부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 확인 전 신고한 내용임 <input type="checkbox"/> 민원제보, 언론보도,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신고 내용이 아님						
신고대상 요양급여비용 항목(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)						
기본진료료	검사료	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	투약 및 조제료	주사료	마취료	이학요법료
정신요법료	처치 및 수술료 등	약제비	입원환자 식대	보철료	응급의료 수가	기타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70조제1항 [별표5]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'4. 감면처분'에 따라 위의 요양급여비용 항목에 대한 부당청구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						
○ 부당청구 내용: ○ 신고 대상기간:						
붙임: 자진신고 세부내역 1부. 끝.						
			년	월	일	
			신고인		(인)	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			귀하			

<작성방법>

※ 신고인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
자진신고 세부내역

▶ 아래와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연번	①접수 년도	②접수 번호	③청구서 일련번호	④명세서 일련번호	⑤보험자 구분	수진자명	생년월일	⑥요양개시일자	⑦기존청구			⑧자진신고		⑨비 고
									청구코드	청구 코드명	청구용량	실제코드	실제사용용량	

작성 방법

※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기재가 필요한 항목은 추가 작성 등 가능합니다.

※ 기재할 내용

- ① 접수년도: 진료비청구포털 등을 통하여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년도
- ② 접수번호: 진료비청구포털 등을 통하여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접수 시 부여된 번호
- ③ 청구서일련번호: 전산부 인계일자에 따라 생성되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번호
- ④ 명세서일련번호: 수진자별 작성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번호(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통합, 외래의 경우 방문일자별)
- ⑤ 보험자구분: 건강보험, 의료급여
- ⑥ 요양개시일자: 진료를 위해 최초 내원한 일자
- ⑦ 기존청구: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 내역(청구코드 및 청구횟수)
- ⑧ 자진신고: 실제 사용한 부신포필호르몬 주사제의 청구코드와 실제 사용 개수를 기재
- ⑨ 비고 : 착오청구 유형 기재 **【A: 실제 사용량 보다 증량청구, B: 동일 성분 약제로 대체 청구, C:기타(사유기재)】**